

강원도립대학교 초빙교원 임용규정

(제정) 2003-11-03 규정 제139호
 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44호
 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 (개정) 2017-02-21 규정 제438호
 (개정) 2019-01-08 규정 제50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 아닌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일정시간을 정하여 대학강의 및 실험실습,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초빙교원이라 함은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초빙에 의하여 수업 또는 연구를 담당하는 자(이하 “초빙교원”이라 한다.)를 말한다.

제3조(임용자격) ① 고등교육법 제16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1. 국가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에서 당해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3. 타 대학에 겸임 또는 초빙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
4.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<개정 2019.1.8.>

② 다만, 특수한 교과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③ 초빙교원의 직명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1.8.>

연구경력 직명	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		
	연구실적 연 수	교육경력 연 수	계	연구실적 연 수	교육경력 연 수	계
초빙교수	4	6	10	5	8	13
초빙부교수	3	4	7	4	6	10
초빙조교수	2	2	4	3	4	7

※ 비고 :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절차) ① 초빙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초빙교원 임용지원서 : 별지 제1호 서식 1부
2. 주민등록등본 1부

3. 이력서 1부
4. 최종 학력증명서 1부
5. 경력증명서 1부
6. 전공 관련 기술자격증 (해당자) 1부
7. 초빙교원 임용추천서 : 별지 제2호 서식 1부

③ 초빙교원은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초빙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만료 후 필요한 경우 재임용 가능(연구 또는 교육경력 직명에 해당될 경우 직명변경 임용 가능)

③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항의 규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10.5.3>

제6조(재임용) ① 초빙 교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장과 교양과목인 경우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본 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. <개정 2016.4.25.>

② 재임용 시는 재임용 추천서'별지 제2호 서식'이외의 구비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 및 복무) ①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 및 실험실습 단, 총장이 인정할 경우 9시간 미만의 강의 및 실험실습 가능 <개정 2019.1.8.>

2.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및 단독연구

3. 학생취업 및 자격증 취득지도

4.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

② 초빙교원은 1주일에 5일 이상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.

③ 초빙교원이 고용계약 기간 중 타기관 등에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초빙교원의 임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하며, 전임교원에 준한다.

제8조(면직)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.

1. 제7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
2. 교원정원 또는 예산이 감소되었을 때
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9조(보수) ① 초빙교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 급여액으로 지급하며, 상여금과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초빙교원의 초과 강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래강사에 준하는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임용인원의 제한)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

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03.11. 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5. 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2.21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. 8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초빙교원 임용지원서

강원도립대학교(지원분야 : 초빙)

지원학과		전공분야		접수번호	
------	--	------	--	------	--

1. 인적사항

주 소	우(-)		사진 (명함판)
성 명	(인) (한자 :)		
생 년 월 일			
직 장 주 소 (전 직 장)	우(-)	전화 번호	(자) (사) (휴대폰)
직 장 명			

2. 학 력

구 분	학교명	학과명	전 공	수학기간	취 득 일	학 위 명
학 사				~		
석 사				~		
박 사				~		

3. 교육경력

임용기간	임용기관(근무처)	직 명(직위)	담당직무	비 고
~				
~				
~				

4. 연구경력(학위과정 수료, 연구소 근무경력 등)

기 간	대학명(연구기관명)	직 명(직위)	연구수행사항	비 고
~				
~				
~				

5. 산업체 등 근무경력

기 간	근무기관(근무처)	직 명(직위)	담당직무	비 고
~				
~				
~				

6. 채용분야와 관련된 수상경력

수 여 기 관	수 상 종 류	수상년월일	비 고

※ 원본제시 및 별쇄본 1부 제출

7. 채용분야와 관련된 해당 자격증 및 특허

자격증 및 특허종목	취득년월일	시행처(출원기관)	비 고

8. 연구실적목록(석사학위 취득 이후)

논문종류	논문제목	게재기관(게재지)	비 고

※ 원본제시 및 별쇄본 1부 제출

초빙교원 임용추천서

인적사항			성 명(한자)		생 년 월 일	
			본직기관명		본직기관직위(급)	
학 력	구 분		출 신 학 교	입학년월일	졸업년월일	전 공
	대 학					
	대학원	석사				
		박사				
주요 경력	임용기간		임용기관 (근무처)	직명(직위)	담당직무	비 고
	~					
	~					
	~					
임용 자격	구 분		연 구 실 적		교 육 경 력	
	소요년수					
	충족년수					
	임용학과					
임용 사항	부여 임무	강의		추천지급		
		연구				
		기타				
추천 사유						
위와 같이 초빙교원 임용대상자로 추천합니다. 년 월 일 학과장 (인)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						